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[별지 제10호서식]

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합격증

수입업자	회사명	
	대표자	전자우편
	주소	전화번호/팩스번호
제조업자	제조국명	
	회사명	
수입 중고 전기용품	제품명	모델명
	제품정격	수량
검사내용	안전인증[ ], 안전확인신고[ ]	

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9조제3항 또는 제36조제3항에 따라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 합격증을 발급합니다.

년 월 일

안 전 인 증 기 관 장 직인

비 고	본 합격증은 「전기용품안전 관리법」에 따른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에 한정하며,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신고가 면제됩니다.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